■민족문화연구 제86호(2020.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5-73.
http://doi.org/10.17948/kcs.2020..86.45

【특집: 조선시대 가례 연구의 축적과 활용】

조선시대 宗廟의 薦新 進上과 儀節
—'任土作貢'·'孝'의 의미—

신진혜(申眞惠)*

목 차

1. 서론
2. 薦新 物種의 정비와 '任土作貢'
3. 임진왜란 이후 薦新進上의 증가
4. 薦新 절차의 구조와 '孝'
5. 결론

국문초록

薦新은 계절에 새로 생산된 식물을 후손들이 먹기 전에 祠堂에 모셔진 조상들께 먼저 바침으로써 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례였다. 이는 사대부가나 왕실에서 모두 시행되었는데, 일반 사대부가에서는 천신으로 '효'를 가시화했다면, 왕실의 宗廟 薦新 의례는 '任土作貢'과 '孝'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각 지역의 토산물을 바친다는 '임토작공'의 뜻에 따라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進上·貢納의 형식으로 생산물을 바치면 이를 바탕으로 종묘의 천신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종묘 천신제도는 태종대부터 정비되어 『國朝五禮儀』에 수록되었다. 하지만 전례서에 지정된 종묘천신 외에도 文昭殿에 대한 천신이 별도로 존재하였고, 『국조오례의』에 지

* 고려대 교양교육원 강사.

정되지 않은 물품이 천신되는 경우도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문소전이 소실된 후 그 천신물종이 종묘로 통합되고, 천신물품의 생산시기에 맞추어 봉진 시기를 재조정하면서 전체적인 천신월령이 재정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동법의 시행으로 일부 현물봉진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른 貿納과 代捧, 退捧을 정식화하였다.

종묘 천신의 陳設과 行禮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과정에는 각도의 道臣과 백성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각 도에서 구하기 까다롭거나 운송이 어려운 천신물품까지 매년 진상해야 한다는 고충이 있었다. 이를 알면서도 왕실에서 천신물종을 함부로 줄이거나 폐지하기 어려웠던 것은 先代에 정한 전례임은 물론 역대로 조선을 통치해왔던 선대왕께 효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동법의 시행과 여러 방법적 절충을 통해 백성들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병행되면서 왕실의 천신은 지속되었다.

주제어: 천신(薦新), 천신월령(薦新月令), 종묘(宗廟), 문소전(文昭殿), 진상(進上), 공납(貢納), 대동법(大同法), 임토작공(任土作貢), 효(孝).

1. 서론

'薦新'은 계절에 새로 생산된 食物을 먹기 전에 조상께 바침으로써 孝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례였다.[1] 이는 사대부 가문에서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공통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조상을 섬긴다는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했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었다. 사대부 가문과는 달리 왕실에서는 천신에 쓰이는 계절산물인 時物을 백성들의 進上・貢納으로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王土에 기반한 任土作貢의 성격까지 포괄하였기 때문이다.[2]

종묘에서 시행되었던 천신의절은 『國朝五禮儀』에 수록되어 있다. 천신은 다른 종묘 의식에 비해 간단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時物을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웠다. 종묘의 천신은 국왕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국왕이 다스리는 왕토의 각 지역에서 바친 外貢을 종묘에 올린다는 상징적 측면에서 무척 중요한 의식이었다.

---

1) 『禮記』 少儀 第17.

2) 조선후기 왕토사상에 관한 이해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송양섭,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 태학사, 2015, 45-47면.

지금까지의 종묘 천신에 관한 연구는 천신의 의례적 구조에 대한 분석,[3] 천신에 사용되는 물품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고,[4] 일제강점기에 천신이 중단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제시된 바 있다.[5]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천신의 대략적 특징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 초기에 제도가 성립되고 그 이후에 변천되어 가는 과정까지 면밀히 분석한 연구는 아직 제시되지 못하였다.

천신은 국가 재정운영의 상징적인 측면이 의례형식으로 가시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종묘 천신은 각 도에서 백성과 道臣에 의해 천신진상이 준비되는 '임토작공'의 단계를 거쳐, 왕실・조정에서 『국조오례의』의 천신의주를 바탕으로 물품을 진설하고 행례함으로써 '효'를 표현하는 단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조선 왕실의 천신은 종묘에 대한 것뿐이지만 실제로는 文昭殿에 대해서도 천신이 이루어졌던 바 있다. 하지만 임진왜란 과정에서 문소전이 소실되었고, 진상과 공납에 대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종묘 천신물목의 종류와 조달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이처럼 천신제도는 의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종묘 천신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고, 조선 전・후기에 걸쳐 정비되고 변화되어 갔던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6] 2장과 3장에서는 각 도에서 천신에 쓰일 계절물품[時物]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상징되는 '任土作貢'의 의미가 조선 전・후기에 어떻게 구현되고 변화되었는지 정리할

3) 한형주, 「영・정조대 변화된 종묘제례가 표현되다: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에 보이는 제사 의식」, 『종묘, 조선의 정신을 담다』, 국립고궁박물관, 2014, 174-177면.

4) 한복진, 「조선시대 궁중의 천신(薦新) 식품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제12권 6호,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02a; 「조선시대 궁중의 천신(薦新) 의례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제12권 6호,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02b; 김상보, 「종묘제례에 정성스럽게 마련한 제찬을 진설하다: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에 보이는 제수」, 『종묘, 조선의 정신을 담다』, 국립고궁박물관, 2014, 204-210면.

5) 신명호, 「융희연간 享祀釐正과 薦新進上廢止」, 『동북아문화연구』 제2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6)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종묘에 대한 천신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왕실에는 종묘 외에도 조선 초기의 文昭殿, 정조대 이후의 景慕宮, 肇慶廟 등에 대한 천신이 존재했다. 이에 관한 정밀한 비교와 분석은 추후의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것이다. 4장에서는 준비된 물품을 바탕으로 '孝'를 표현하는 천신의식을 시행했던 양상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천신이 단순한 의식행위가 아닌 왕토를 계승하게 해 준 역대조에 대해 '任土作貢'과 '孝'의 의미를 드러내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薦新 物種의 정비와 '任土作貢'

『禮記』「王制」에 '大夫와 士는 종묘에 대해 祭田이 있을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고, 제전이 없을 경우에는 薦新만 한다.'고 하였다. 즉, 사대부에게 제전이 없어 犧牲을 쓰는 祭享을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향이 아닌 방식으로 조상을 섬기는 의식이 천신이었다.[7] 이 뿐만 아니라 「少儀」에서는 '薦新하지 않았으면 새 과일을 먹지 않는다.[未嘗不食新]'하여 자신이 먹기 전에 침묘에 천신한다는 孝의 의미도 내포하였다.[8] 조선에서 시행되었던 천신은 보편적인 효의 상징이었다.[9] 여러 行狀에서 효에 대해 기술할 때 '천신하지 않고는 먼저 맛보지 않았다'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대부 가문뿐만 아니라 왕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10]

천신은 왕실과 사대부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었던 조상을 섬기는 孝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천신에 쓰이는 시물이 준비되고 상납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다. 왕실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분정된 물품이 중앙으로 조달되면 그 물품이 왕실의 各殿에서 소모되기 전에 천신하였다. 王土思想에 입각한 任土

7) 『禮記』 王制 第5. "大夫士宗廟之祭, 有田則祭, 無田則薦. 庶春薦韭, 夏薦麥, 秋薦黍, 冬薦稻. 韭以卵, 麥以魚, 黍以豚, 稻以雁."

8) 『禮記』 月令 第6; 少儀 第17.

9) 『小學』의 주에서 '薦新한 뒤에 비로소 먹는 것은 하나의 음식물에 대해서도 감히 부모를 잊지 못하는 것이다. 천신하지 않고서 먼저 새로 나는 음식물을 먹는 것은 그 부모를 죽은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며, 효심을 잃는 것이다.'라 하여 천신하는 의식이 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언급했다. 金長生, 『沙溪全書』 卷25 家禮輯覽 通禮.

10) 왕실에서도 천신이 가진 孝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성종 10년(1479)에 연산군의 생모인 齊憲王后 윤씨를 폐출할 때 그 이유로 "우리들은 항상 時物을 만나면 비록 이미 薦新하였더라도 오히려 차마 홀로 맛보지 못하고 반드시 다시 原廟에 올리게 하고 난 다음에 이를 맛보는데, 중궁은 우리들이 비록 간곡하게 타일러도 아예 薦新할 마음을 두지 않고 모두 다 사사로이 써버렸다."는 내용이 함께 거론된 것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成宗實錄』 卷105 成宗 10年 6月 5日 庚寅.

作貢의 원리에 따라 進上과 貢納의 형식으로 준비된 물품을 왕실조정에서 효의 의미를 담아 역대조께 천신한다는 이중적인 구조를 띠었던 것이다. 공납과 진상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尙書』「夏書」의 '禹貢'편인데 여기에서 바로 '任土作貢'이라는 공납과 진상의 근본 취지가 발생하였다.[11]

「하서」 서문에 따르면, 禹 임금이 홍수를 평정한 뒤 전국을 豫州·冀州·兗州·青州·徐州·揚州·荊州·梁州·雍州의 9주로 구획 편성하고[禹別九州], 산을 따라 川을 준설하고[隨山浚川], 토산에 맞게 공물을 바치게 했다[任土作貢].[12] 9주 가운데 天子 封內의 땅인 冀州를 제외한 여덟 개의 주에서 공물을 받았는데,[13] 여기서의 '임토작공'이 바로 유교국가 공물제의 근본을 이룬다. 공물은 직접적으로, 혹은 가공된 형태로 천자와 백관의 제사나 의례, 왕실의 생활, 조정의 운영에 사용되었다.[14]

임토작공에 바탕을 둔 공납과 진상 가운데 各道의 外貢과 官署에서 바치는 食物을 의례적 형식으로 역대조상께 바치는 것이 바로 왕실의 천신이었다. 조선 왕실의 천신은 구조적으로 時物 준비→의례시행→시물 소비의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백성들에 의해 시물이 진상·공물로써 준비되는 과정을 거쳐, 왕실조정에서 그것을 종묘에 바치는 천신이 이루어졌고, 천신한 이후에 비로소 왕실과 조정에서 시물을 소비할 수 있었다.

조선 초엽 천신의례가 공식적으로 성립되기 전까지는 왕이 직접 특정 물목을 천신하도록 명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15] 천신의례를 적극적으로 상정하기 시작했던 것은 태종대에 이르러서였다. 매달의 천신월령은 물론 사냥하

---

11) 『상서』 우공에 기반한 경제적 구조에 관한 연구는 다음 논고를 참조할 수 있다. 유영옥, 「조선시대 『尙書』 禹貢 이해의 정치경제적 시각」, 『東洋漢文學硏究』 제37집, 東洋漢文學會, 2013.

12) 「序」, 『尙書』 卷3 夏書. "禹別九州, 隨山浚川, 任土作貢."

13) 『尙書』 卷3 夏書 禹貢. "冀獨不言貢者, 冀天子封內之地, 無所事於貢也."

14)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물의 운용은 왕권을 중심으로 諸侯·夷狄과의 정치질서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이루는 왕실과 조정의 '정치적 신체'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원리로 작동했음을 규명하였다. 渡邊信一郎, 문정희 옮김, 『천공의 옥좌—중국 고대제국의 조정과 의례—』, 신서원, 2002, 186-190면.

15) 일례로, 태조 5년(1396)에 채소·柑子·사냥한 짐승을 천신하도록 했고, 6년(1397) 4월에 새로 난 石首魚, 10월에 天鵝, 그리고 7년 3월에는 山菜를 천신하도록 했다. 『太祖實錄』 卷9 太祖 5年 3月 29日 丙戌; 卷11 太祖 6年 4月 1日 癸未; 卷12 太祖 6年 10月 5日 癸未; 卷13 太祖 7年 3月 15日 壬戌.

여 얻은 禽獸를 천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태종 3년(1403) 『文獻通考』를 바탕으로 왕이 사냥하는 예를 상고하고, 사냥한 것을 종묘에 천신하는 의례를 상정하도록 명했다.[16] 태종 12년(1412) 2월에 예조에서 사냥한 짐승을 종묘에 올리는 薦禽儀를 올렸고,[17] 동년 8월에 한 해 동안 매달 종묘에 바칠 천신 時物의 목록 역시 대략 정리되었다.[18]

하지만 이때 정리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다. 『世宗實錄』「五禮」, 『國朝五禮儀』에 수록된 천신에 관한 내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천신물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고려조의 사례,[19] 여러 경전과 명나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 풍토에 맞추어 정리되었다.[20] 천신물의 종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6) 『太宗實錄』 卷6 太宗 3年 10月 1日 乙巳.

17) 『太宗實錄』 卷23 太宗 12年 2月 26日 辛巳. 태종은 짐승을 얻게 되면 종묘에 천신하도록 하였다. 『太宗實錄』 卷24 太宗 12年 9月 28日 庚戌; 卷26 太宗 13年 10月 10日 丙辰; 卷28 太宗 14年 閏9月 4日 甲辰. 하지만 모든 포획물을 천신한 것은 아니었다. 태종 13년에 대부곶이[大釜串]에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는 천신하지 않았다. 12월 이후의 獐鹿은 맛이 없고 때에 알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春蒐에 잡은 것은 앞으로 종묘에 천신하지 말도록 하였던 것이다. 『太宗實錄』 卷25 太宗 13年 2月 12日 辛酉.

18) 『太宗實錄』 卷24 太宗 12年 8月 8日 庚申.

19) 『高麗史』 卷61 志15 禮3 太廟.

20) 한 해의 천신 물품을 12개월에 나누어 각각 따로 정리한 것은 명나라의 예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明史』에서는 12개월의 천신물을 각각 따로 정리한 반면, 『唐開元禮』와 『通典』에서는 천신물을 한꺼번에 나열하고 이러한 品物 가운데 때에 맞게 올리도록 정리되어 있다. 『明史』 卷55 志27 禮5 吉禮5; 『通典』 禮76 薦新于太廟; 薦新物; 『唐開元禮』 卷51 吉禮 薦新于太廟.

『明史』 및 『通典』의 薦新物 구성

분류	물품											
明史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韭, 薺, 生菜, 雞子, 鴨子	水芹, 蔞蒿, 台菜, 子鵝	茶, 筍, 鯉魚, 鮆魚	櫻桃, 梅, 杏, 鱘魚, 雉	新麥, 王瓜, 桃, 李, 來禽, 嫩雞	西瓜, 甜瓜, 蓮子, 冬瓜	菱, 梨, 紅棗, 蒲萄	芡, 新米, 藕, 茭白, 薑, 鱖魚	小紅豆, 栗, 柿, 橙, 蟹, 鯿魚	木瓜, 柑, 橘, 蘆菔, 兔, 雁	蕎麥, 甘蔗, 天鵝, 鷞老, 鹿	芥菜, 菠菜, 白魚, 鯽魚
通典	冬鱼, 蕨, 崋, 蒲, 白韭, 堇, 小豆, 胥豆, 蘘荷, 菱人, 子姜, 麥索, 春酒, 桑落酒, 竹根, 黃米, 粳米, 糯米, 粱米, 稷米, 茄子, 甘蔗, 芋子, 鸡头人, 苜蓿, 蔓菁, 胡瓜, 冬瓜, 瓠子, 春鱼, 水苏, 枸杞, 芙茨, 子藕, 大麦弃, 瓜, 油麻, 麦子, 椿头, 莲子, 栗, 冰, 甘子, 李, 櫻桃, 杏, 林檎, 橘, 椹, 菴罗果, 枣, 兔脾, 獐, 鹿, 野鸡.											

〈표 1〉 태종-성종대 천신 비교[21]

	『高麗史』		太宗 12年		『世宗實錄』「五禮」		『國朝五禮儀』	
1월 孟春	-	0	-	0	-	0	靑魚	1
2월 仲春	冰	1	氷	1	氷	1	氷, 松魚	1
3월 季春	-	0	蕨	1	蕨	1	蕨	1
4월 孟夏	麥, 櫻桃	2	松魚	1	松魚	1	筍	1
5월 仲夏	-	0	麥, 筍, 瓜, 櫻桃, 杏	5	大麥, 小麥, 筍, 瓜, 櫻桃, 杏	7	大麥, 小麥, 瓜, 櫻桃, 杏	5
6월 季夏	-	0	林檎, 茄, 冬瓜	3	林檎, 茄子, 冬瓜,	3	稻, 黍, 稷, 粟, 茄子, 冬瓜, 林檎	7
7월 孟秋	黍, 稷, 粱米	3	黍, 稷, 粟	3	黍, 稷, 粟	3	鱘魚, 梨	2
8월 仲秋	麻子	1	年魚, 稻, 栗	3	年魚, 稻, 栗	3	柿, 棗, 栗, 新酒	4
9월 季秋	稻米	1	雁, 棗, 梨	3	雁, 棗, 梨	3	鴈	1
10월 孟冬	-	0	柑, 橘	2	柿, 橘, 柑	3	橘, 柑, 薦禽 [蒐射所獲禽獸]	3
11월 仲冬	-	0	天鵝	1	天鵝	1	天鵝, 瓜魚	2
12월 季冬	魚	1	魚, 兎	2	魚, 兎	2	魚, 兎	2
총계	9		25		27		33	

조선 전기에는 종묘뿐만 아니라 文昭殿에 대해서도 천신이 이루어졌지만, 종묘에 대한 천신물목 규정만 전례서에 명료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종묘에는 다소 선별된 시물만을 올렸던 반면, 문소전에는 生時에 즐기던 시물까지 다양한 물종이 천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물목 외에도 別進上으로 올라온 물품 역시 천신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 『국조오례의』에 정식화된 종묘에 대한 물목의 정리과정을 분석하고, 문소전에 대한 천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교차검토해보고자 한다.

『고려사』에 정리된 천신물은 『예기』에 지정되어 있는 시물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으며,[22] 2·4·7·8·9·12월의 6개월만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되

21) 『高麗史』 卷61 志15 禮3 太廟; 『太宗實錄』 卷24 太宗 12年 8月 8日 庚申; 『世宗實錄』 卷130 「五禮」 吉禮 薦新宗廟儀[蒐狩薦禽附]; 『國朝五禮儀』 卷1 吉禮 宗廟薦新儀.

22) 태종 원년 12월의 기록과 『高麗史』 「禮志」를 바탕으로 고찰해보면, 고려조에는 『禮記』와 呂不韋

어 있다. 반면 태종대와 세종대에 정리된 천신은 1월을 제외한 11개월에 대해 정리되어 있으며, 『국조오례의』에 이르러서는 12개월의 물목이 모두 정리되었다. 태종 12년과 『세종실록』의 기록은 1월부터 4월까지는 동일하다. 하지만 5월령의 경우는 麥을 대맥과 소맥으로 구체화했고, 10월령에 柿가 추가되었다.

麥 천신은 조선의 풍토에 맞추어 조정한 결과였다. 고려조에는 呂不韋의 月令說을 바탕으로 孟春에 藉田을 가는 방식을 따랐고 『禮記』「月令」에는 보리 천신이 孟夏에 있지만, 조선의 맹하는 기후가 조금 늦어서 보리가 여물지 못하기 때문에 仲夏를 사용하도록 하였다.[23] 그리고 태종 12년조의 기록과 『세종실록』「오례」에 기록된 시물 외에도 천신에 사용했던 물품들이 있었는데, 이는 『국조오례의』 성립 시에 일부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태종 13년(1413) 8월에 이르러 新酒를 천신하라고 명한바 있는데[24] 이것이 『국조오례의』의 8월령에 추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태종 12년부터 세종대까지 시물을 올리는 천신과 사냥한 금수를 올리는 薦禽이 병존했는데,[25] 『국조오례의』 단계에 이르러 통합되었다. 10월에 사냥한 금수를 종묘에 올리는 일은 이미 태종 10년(1410)에 논의되었던 바 있다.[26] 그리고 『세종실록』 오례에 '종묘에 사냥한 짐승을 올린다.'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봄사냥과 겨울사냥에서 잡은 사슴・노루・꿩 등류를 使者를 보내어 종묘에 가서 올리게 한다고 하였다.[27] 이는 『국조오례의』 10월 천신월령에 薦禽과 더불어 '활로 쏘아 잡은 禽獸'로 기재되었다. 『국조오례의』에는 금수의 명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세종실록』「오례」

의 월령을 참조하여 천신 제도를 정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禮記』 王制 第5; 『太宗實錄』 卷2 太宗 元年 12月 21日 乙亥. 고려연간의 『예기』 이해와 적용에 관한 연구는 다음 논고를 참조하였다. 한정수, 「高麗時代 『禮記』 月令思想의 도입」, 『사학연구』 제66호, 한국사학회, 2002.

23) 『太宗實錄』 卷2 太宗 元年 12月 21日 乙亥.

24) 『太宗實錄』 卷26 太宗 13年 8月 30日 丙子.

25) 『世宗實錄』 卷128 五禮 吉禮 序例 獻官 薦禽祭行事執事官; 卷130 五禮 吉禮 薦新宗廟儀[蒐狩薦禽附].

26) 의정부에서 역대에 丑月에 사냥한 것을 썼는데 축월은 『예기』에 주나라의 10월이었음을 상언했고, 태종은 10월에 금수가 모두 아름답다며 이러한 의견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太宗實錄』 卷20 太宗 10年 10月 9日 壬寅.

27) 『世宗實錄』 卷128 五禮 吉禮 序例 時日.

에서 '蒐狩에 사슴·노루·꿩을 올리는 데는 각기 豆에 담는다.'고 하여 대략 사슴과 노루, 꿩을 주로 준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28]

11월령에 속한 天鵝는 명나라의 예를 참조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성종 4년(1473) 詳定橫看에 천아를 2월과 9월에 모두 종묘에 바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 예조에서 한 해에 같은 천신물을 두 번 천신하는 법이 없다는 古制와 세종 때의 詳定儀에서 어긋나는 일이니 11월에만 천신하도록 아뢰었고 그에 따라 조정되었다.[29] 천아는 조선에서 구하기 어려워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끝내 폐지하지 않았다. 천아는 명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천신물목으로 정한 것이고 국초부터 태조께서 드셨다는 이유 때문이었다.[30]

이처럼 구체적인 천신월령을 지정하였지만 생산물이 익는 시기가 정해진 월령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월령에 구애받지 말고 익는 대로 봉진하는 변통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태종대부터 거론되었는데, 『세종실록』「오례」에 '新物의 익는 것이 혹 일찍 익는 것과 늦게 익는 것이 있으니, 그 익는 것에 따라서 천신하고 月令에 구애할 필요는 없다.'는 조항을 수록하여 구체화하였고,[31]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착되었다.[32] 예를 들어, 세조 2년(1456) 5월에 세조는 京中과 여러 도에서는 시기에 맞추어 햇참외[新瓜]를 올리지 못하였는데 경상도 관찰사가 마음먹고 培養하여 가장 먼저 참외를 진상한 것을 기뻐하며 종묘에 천신하였다.[33]

요컨대, 태종대부터 적극적으로 정비되었던 천신제도는 『국조오례의』로 정리가 완료되었다. 12월령의 천신물품이 정리되었고, 陳設과 行禮절차를 구체적인 의주로 상정하였다. 하지만 『국조오례의』에 지정된 종묘 천신 이 외에도

---

28) 『世宗實錄』 卷130 五禮 吉禮 薦新宗廟儀 陳設.
29) 『成宗實錄』 卷37 成宗 4年 12月 5日 辛酉.
30) 숙종 8년 천아를 일시적으로 대봉하도록 하면서 이것은 태조대왕께서 드셨던 것이니 풍년이 되면 다시 복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肅宗實錄』 卷13 肅宗 8年 12月 10日 癸未.
31) 『世宗實錄』 卷128 五禮 吉禮 序例 時日.
32) 『太宗實錄』 卷20 太宗 10年 8月 10日 甲辰; 『世宗實錄』 卷47 世宗 12年 3月 27日 丁卯; 『世祖實錄』 卷38 世祖 12年 2月 22日 甲午; 『中宗實錄』 卷60 中宗 23年 1月 22日 乙未.
33) 『世祖實錄』 卷4 世祖 2年 5月 1日 己巳.

문소전에 대한 천신물품이 별도로 존재하였고, 정식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이 천신되는 경우도 있었다. 천신에 관한 진설물종과 행례에 대한 내용들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러 제도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변화되고 다듬어졌다.

3. 임진왜란 이후 薦新進上의 증가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종묘·사직의 신주와 위판을 가지고 파천을 다니는 과정에서도 천신은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예를 갖추기 위한 물력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은 물론 의례 시행에 관련된 典籍과 謄錄이 모두 소실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新物을 얻게 되면 역대조께 예를 올리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얻게 되는 모든 新物을 무조건 종묘 신주 앞에 천신했던 것은 아니었다. 반드시 해당 물품이 종묘에 바치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논의하였다.[34]

전란 이후 여러 제도와 함께 천신 역시 점차 복구되어 갔는데, 대동법 시행과 같은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각 군현의 전결수와 민호수 및 토산물을 기반으로 貢案이 작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進上과 貢物이 구성되었다.[35] 조선왕조의 사상적 기반을 구현한 경제체제였던 공물과 진상은 국가 재정의 약 60%를 차지했다.[36]

하지만 당시의 제도는 해당 지역에 물품이 생산되지 않아 상납이 어렵거나 방납으로 인해 폐단이 일어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이 논의되었다.[37] 대동법은 토지를 중심으로 공물가를 설정

34) 이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신진혜, 「임진전쟁기 종묘의 소실과 재건 과정 연구」, 『역사학보』 제240집, 역사학회, 2018, 385-389면.

35) 공물과 진상의 이념적 구분에 대한 연구 및 진상의 종류를 정리한 것은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田川孝三, 「李朝貢納考」,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1964; 德成外志子, 「朝鮮王朝後期の國家財政と貢物·進上」, 『朝鮮學報』 第173輯, 朝鮮學會, 1999.

36) 德成外志子, 「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中人層貢人」,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34면.

37) 기존 연구에서는 대동법의 성립은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 이미 관행화되었던 사대동을 일률적 부세제도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이었고, 이것이 대동법 시행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고석규, 「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 『한국사론』 제12호, 서울대 국사학과, 1985, 211-214면.

하여 수취하고 이를 공인에게 지급하여 왕실과 정부에 필요한 물자를 貿納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여전히 현물로 납부해야 하는 품목들이 남아있었지만 이는 큰 변화였다.[38]

종묘 천신물품은 각 官署에서 봉진하는 것과 백성들이 봉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39] 백성들이 봉진하는 일부 물목은 米價 형식으로 각 도에 분정되었다.[40] 대동법은 거둬들인 미포를 선혜청에서 공물주인에게 급가하여 봉진하게 하였던 것은 물론이고, 생산이 중단된 물종이나 계절이 일러 생산되지 않는 물종은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바칠 수 있다는 '代捧', 정해진 시기보다 나중에 바칠 수 있다는 '退捧'을 명료하게 정식화했다.

종묘 천신에 쓰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일부는 현물봉진을 유지하면서도 무납과 대봉, 퇴봉을 허락하였다. 『호서대동사목』 2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묘 천신에 쓰는 大麥과 小麥, 生兎는 값을 받아 봉진했음을 알 수 있다.[41] 대동법으로 인해 천신물의 봉진시기를 제때 맞추는 일이 용이해졌다. 가령, 黍·稷·早稻와 같은 물품을 철이 지나고서야 종묘에 천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동법을 바탕으로 값을 거두어 상납하고 선혜청에서 구매하게 함으로써 제때 봉진할 수 있었다.[42] 비록 지역의 소산을 현물로 바친다는 본원적 원칙에서는 멀어졌지만 貿納과 대봉·퇴봉 등의 방식을 통해 임토작공의 원칙을 고수해나갔던 것이다.

봉진 방법뿐만 아니라 각 월별 천신물품의 종류 역시 조정되었다. 효종 4년(1653)에 각전의 봉진과 종묘 천신 법식을 개정하였는데,[43] 정해진 월령

38) 대동법에 관련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한영국, 「호서에 실시된 대동법(下)」, 『역사학보』 제14집, 역사학회, 1960; 田川孝三, 앞의 글; 德成外志子, 앞의 글, 1999; 앞의 글, 2001; 고석규, 앞의 글; 이정철, 『대동법 : 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0;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 :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4.

39) 『薦新進上謄錄』(장K2-2577); 『每事問』.

40) 『江原廳事例』(奎15231) 「詳定恒式會減」·「收租」·「各樣詳定會減」, 『湖南廳事例』(奎15232) 「儲置會減」·「進上」, 『忠淸道大同事目』(奎1594), 『全南道大同事目』(奎1556)을 통해 천신에 사용할 물목과 이를 위한 가격책정, 분정 실태 등이 확정되어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1) 『忠淸道大同事目』(奎1594); 이정철, 앞의 책, 508-527면.

42) 『備邊司謄錄』 25冊 顯宗 6年 9月 6日.

에 비해 물품이 빨리 봉진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물품을 바치는 시기 자체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천신월령이 조정된 것은 숙종 32년(1706) 성립된『宗廟儀軌』에서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종묘의궤』에 기재되어있는 천신월령 물품의 종류는『국조오례의』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는 봉진시기 및 물품의 양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성종대의『국조오례의』, 숙종대의『종묘의궤』, 정조대의『春官通考』에 수록된 월령 천신 물품의 변천 과정을 표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薦新月令 物品 변천과정[44]

	『國朝五禮儀』		『宗廟儀軌』		『春官通考』	
1월 孟春	靑魚	1	早薤	1	早薤	1
2월 仲春	氷, 松魚	2	氷, 松魚, 生鰒, 雀舌茶, 半乾雉, 生蛤, 絡蹄, 水芹	8	氷, 松魚, 生鰒, 雀舌茶, 半乾雉, 生蛤, 絡蹄, 水芹	8
3월 季春	蕨	1	蕨菜, 靑橘, 辛甘菜, 黃石魚, 生石魚, 訥魚, 葦魚	7	蕨菜, 靑橘, 辛甘菜, 黃石魚, 生石魚, 訥魚, 葦魚	7
4월 孟夏	筍	1	竹筍, 眞魚, 烏賊魚	3	竹筍, 眞魚, 烏賊魚	3
5월 仲夏	大麥, 小麥, 瓜, 櫻桃, 杏	5	黃杏, 櫻桃, 苽子, 大麥, 小麥	5	黃杏, 櫻桃, 苽子, 大麥, 小麥	5
6월 季夏	稻, 黍, 稷, 粟, 茄子, 冬瓜, 林檎	7	稷米, 黍米, 粟米, 稻米, 林檎, 銀口魚, 茄子, 冬苽, 西果, 眞果, 李實	11	稷米, 黍米, 粟米, 稻米, 林檎, 銀口魚, 茄子, 冬苽, 西果, 眞果, 李實	11
7월 孟秋	鰱魚, 梨	2	鰱魚, 生梨, 蓮實, 榛子, 柏子, 胡桃, 靑葡萄	7	鰱魚, 生梨, 蓮實, 榛子, 柏子, 胡桃, 靑葡萄	7
8월 仲秋	柹, 棗, 栗, 新酒	4	紅柹子, 新淸酒, 大棗, 生栗, 松茸, 鮒魚, 生蟹	7	紅柹子, 新淸酒, 大棗, 生栗, 松茸, 鮒魚, 生蟹	7
9월 季秋	雁	1	生雁, 石榴, 山葡萄, 獼猴桃	4	生雁, 石榴, 山葡萄, 獼猴桃	4
10월	橘, 柑,	3	柑子, 金橘, 柚子, 薯蕷,	10	柑子, 金橘, 柚子, 薯蕷,	9

43)『孝宗實錄』卷10 孝宗 4年 5月 25日 庚寅.

44)『國朝五禮儀』,『宗廟儀軌』(奎14220),『春官通考』(奎12272)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밑줄은 이전 시기와 달라진 물목을 표기한 것이다.

孟冬	薦禽[蒐射所獲禽獸]		文魚, 銀杏, 薦禽, 乾柹子, 大口魚, 銀魚		文魚, 銀杏, 乾柹子, 大口魚, 銀魚	
11월 仲冬	天鵝, 瓜魚	2	白魚, 瓜魚, 靑魚, 天鵝, 唐柚子	5	白魚, 瓜魚, 靑魚, 天鵝	4
12월 季冬	魚, 兎	2	洞庭橘, 乳柑, 秀魚, 生兎	4	唐柚子, 洞庭橘, 乳柑, 秀魚, 生兎	5
총계	33종		72종		71종	

천신물품은 임토작공의 뜻을 바탕으로 각 도에서 바치던 外貢과 籍田 및 司圃署·掌苑署 등의 各司에서 바치던 供上으로 구성되었다. 경기도(牛乾雉·生蛤·辛甘菜·黃石魚·生石魚·訥魚·眞魚·烏賊魚·稻米·榛子·生蟹·生雁·山葡萄·獼猴桃·柚子·秀魚)에 할당된 것과 더불어 외공의 경우는 평안도를 제외한 강원도(早薤·松魚·銀口魚·李實·柏子·松茸)·충청도(生石魚·大麥·小麥·紅柹子·天鵝·生兎)·경상도(竹筍·胡桃·乾柹子·天鵝)·전라도(生鰒·雀舌茶·蕨菜·小麥·天鵝)·황해도(蓮實·生石魚)·함경도(鰱魚·瓜魚·天鵝)·제주도(靑橘·金橘·唐柚子·洞庭橘·乳柑)에 분정되어 있었다.[45]

위의 비교표를 통해 33종으로 정리되었던 성종대 『국조오례의』의 천신물종에 비해 숙종 32년에 정리된 『종묘의궤』에서는 72종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묘의궤』의 천신품목은 정조대의 『춘관통고』에도 거의 유사하게 수록되어있다. 다만, 『춘관통고』 단계에서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냥 관련 물품인 10월령의 薦禽 항목이 제외되면서 사냥에 관한 것은 모두 사라진 것, 11월령의 唐柚子가 12월령으로 옮겨진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정조대에도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대체적 정리는 숙종대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조오례의』 이후 변경된 천신월령의 특징을 정리하면 ①『국조오례의』에

45) 본문의 경기 및 각도 외공의 물목은 인조대부터 영조대까지의 경향을 『薦新進上謄錄』(奎12913)·『忠淸道大同事目』(奎1594)·『全南道大同事目』(奎1556)·『宗廟儀軌』(奎14220)·『宗廟儀軌續錄』(장K2-2203)·『備邊司謄錄』을 교차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이다. 헌종대의 자료로 추정되는 『每事問』(규5120-147)에 기재된 各道의 外貢은 1월의 早薤, 2월의 生鰒·雀舌·松魚, 3월의 靑橘, 6월의 銀口魚, 7월의 鰱魚·蓮實·胡桃·柏子, 8월의 紅柹·松茸, 9월의 石榴, 10월의 乾柹子·大口魚·金橘·銀魚·柚子·文魚, 11월의 唐柚子·天鵝·靑魚·瓜魚, 12월의 乳柑·洞庭橘이다. 천신진상은 광무연간까지 이어졌는데, 당시에는 물목이 축소되었기에 강원·경상·전라·황해·함경·제주도의 여섯 지역에서 진상되었다. 광무연간에 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고하였다. 신명호, 앞의 글, 163-165면.

지정되어 있는 물목의 봉진시기를 조정한 것, ②정식으로 정해진 종묘천신 물목이 아니었으나 새롭게 추가된 것, ③『국조오례의』에 있었으나 폐지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1월령부터 12월령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조오례의』에서는 1월령에 해당했던 靑魚가 『종묘의궤』에서는 11월령으로 옮겨졌다. 뿐만 아니라 물목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월령의 경우는 물품이 청어에서 早薑으로 변동되었고, 2월령은 生鰒・雀舌茶・半乾雉・生蛤・絡蹄・水芹이 추가되었다. 2월령에 추가된 생복의 경우는 조선 전기부터 細引鰒의 형태로 이미 공납되고 있었던 물품이다. 전라도 光陽・樂安・順天 등 고을에서 해마다 細引鰒을 貢納하였고 천신 역시 이루어지고 있었다.[46] 이것이 『종묘의궤』에 細引鰒이 아닌 生鰒의 형태로 추가되어 정식 천신월령 대상이 된 것이다.

3월령은 靑橘・辛甘菜・黃石魚・生石魚・訥魚・葦魚가 추가되었다. 3월령에 추가된 黃石魚는 세종 30년(1448)에 京畿 산출물인 황수어를 文昭殿・輝德殿의 3월 천신월령으로 삼도록 전지하였던 바 있다.[47] 生石魚 역시 태조 6년(1397) 4월에 천신한 적이 있으며[48] 지속적으로 왕실조정에서 소모하고 있었지만 『국조오례의』의 종묘천신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었다.[49] 조선 전기에 천신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종묘 천신물목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물목들이 『종묘의궤』에 이르러 정식 천신월령으로 추가되었던 것은 임진왜란 이후 소실된 문소전을 복구하지 않음으로써 문소전의 천신월령 일부가 종묘 천신월령으로 소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월령에는 眞魚・烏賊魚가 추가되었고, 5월령은 『국조오례의』와 동일했고, 6월령에는 銀口魚・西果・眞果・李實가 추가되었다. 특히 6월령으로 추가된

46) 『成宗實錄』 卷47 成宗 5年 9月 11日 癸亥.
47) 『世宗實錄』 卷120 世宗 30年 4月 5日 庚申.
48) 『太祖實錄』 卷11 太祖 6年 4月 1日 癸未.
49) 석수어는 전라도와 황해도에서 생산했으며, 알젓을 담그거나 활을 만들 때 석수어 魚膠를 쓰기도 하였다. 『世宗實錄』 卷62 世宗 15年 10月 28日 丁丑; 卷77 世宗 19年 5月 1日 庚寅; 卷47 世祖 14年 7月 10日 丁卯; 卷21 世祖 6年 7月 1日 乙亥.

銀口魚는『국조오례의』종묘 천신물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천신되었던 바 있다. 구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때에 따라 감해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고,[50] 정부에서 사사롭게 잡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51] 하지만 은구어 진상과 천신은 폐지되지 않았고 조선후기에 이르러 정식으로 천신물목에 수록되었다.

7월령에는 蓮實・榛子・柏子・胡桃・靑葡萄가 추가되었고, 8월령에는 松茸・鮒魚・生蟹가 추가되고 新酒가 新淸酒로 구체화되었으며, 9월령은 石榴・山葡萄・獼猴桃가 추가되었다. 8월령에 추가된 生蟹는 문소전에 천신되었던 물품인데 이 역시 종묘천신으로 옮겨졌다. 세조 3년(1457)에 문소전 외에는 게를 천신하지 않도록 전지했으나[52] 문소전 소실 이후로 종묘에 옮겨졌던 것이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은 10월령인데,『국조오례의』에서는 禽, 獸와 같이 사냥에 관련된 물품이 남아있었지만『종묘의궤』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날짐승에 해당하는 薦禽만 남고 나머지는 제외되었다. 짐승 진상으로 인한 폐단이 여러 차례 거론되었지만 끝내 폐지되지 못하다가[53] 후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부분이 천신에서 제외되었고『춘관통고』에 이르러서는 薦禽까지 제외되어 사냥과 관련된 물품이 완전히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종묘의궤』의 10월령에는 柚子・薯蕷・文魚・銀杏・乾柹子・大口魚・銀魚와 같은 물품이 추가되었다. 10월령에 추가된 문어와 은어는 세조연간에도 천신되었던 물목이지만,[54]『종묘의궤』에서부터 정식 물목으로 정해졌다. 대구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조 9년(1463) 11월에 강원도관찰사 金禮蒙이 천신할 마른 大口를 늦게 바쳐서 이미 못쓰게 되었다는 기록을 통해[55] 대구어가 예전부터 왕실에서 천신하는 대상이었지만 전란 이후부터 정식 종묘 천신물목으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0)『中宗實錄』卷21 中宗 9年 12月 10日 戊戌.
51)『明宗實錄』卷27 明宗 16年 8月 4日 辛酉.
52)『世祖實錄』卷9 世祖 3年 9月 28日 己丑.
53)『中宗實錄』卷20 中宗 9年 9月 16日 乙亥; 中宗 9年 9月 28日 丁亥; 卷21 中宗 9年 12月 10日 戊戌; 中宗 9年 12月 21日 己酉.
54)『世祖實錄』卷26 世祖 7年 11月 8日 甲辰.
55)『世祖實錄』卷31 世祖 9年 11月 12日 丙寅.

11월령은 白魚·唐柚子가 추가되었고, 본래 1월령이었던 靑魚가 11월로 옮겨졌으며, 12월령으로는 洞庭橘·乳柑이 추가되었다. 11월령의 天鵝는 태종대부터 구하기 어렵고 값이 비싸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진상물로 거론되었지만,[56] 明禮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고 국초에 태조가 드셨던 것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진상을 중지하지 못했다.[57] 인조 5년에는 천아 공상혁파가 거론되었고,[58] 효종 3년(1652)에는 洪淸道의 천아 공상을 기러기로 대봉하게 해주었던 바 있다. 이 시기에 기러기도 아울러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건의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9] 대동법 시행 이후 천아는 三南과 北道에 分定하여 5년에 한 차례씩 돌아가며 봉진하였는데, 호남에서는 상납미로 호남청에서 무납하였고 호서에서는 生雁으로 대봉하였다.[60] 이후 숙종 8년(1682)에도 천아를 生雉로 잠시 대봉하자는 의견이 있어 일시적인 대봉을 허락하고 풍년이 되면 복구하도록 하였다.[61] 이처럼 백성의 고충을 염려해 일시적인 대봉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천신이 가지는 의례적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폐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성종대의 『국조오례의』와 숙종대의 『종묘의궤』 천신물목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조선 전기부터 존재했던 別進上 및 소실된 문소전의 천신월령 일부가 종묘 천신월령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연대기 상에서는 『국조오례의』에 정리된 종묘천신월령 이외의 물품이 천신되었던 기록이 확인되는데, 이는 문소전과 혼전에 천신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물품이 임진왜란 때 소실된 문소전이 재건되지 않으면서 종묘천신월령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조선후기 당대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정해졌던 천신월령 봉납시기에 비해 물품이 빨리 봉진

56) 『太宗實錄』 卷36 太宗 18年 7月 6日 甲寅.
57) 『宗廟儀軌』 3冊 薦新.
58) 『仁祖實錄』 卷16 仁祖 5年 4月 19日 乙卯.
59) 『孝宗實錄』 卷9 孝宗 3年 12月 14日 壬子.
60) 『忠淸道大同事目』(奎1594); 『全南道大同事目』(奎1556).
61) 『肅宗實錄』 卷13 肅宗 8年 12月 10日 癸未.

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물품을 바치는 시기 자체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다.[62]

조선전기에 지정되었던 종묘 천신 시물은 경전에서부터 유래된 大麥・小麥, 稻, 黍, 稷이나 고려와 명나라의 사례를 참고한 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실제로 왕실에서 먹는 것들은 대체로 문소전에 천신하는 경향이었다. 하지만 문소전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평상시에 먹는 것까지 종묘 천신으로 일부 합쳐지면서, 종묘 천신은 상징적인 시물과 실제로 소모하는 시물이 모두 포함되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천신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겪었지만 왕실에서는 임토작공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대동법 시행 이후로도 여러 도에 중첩된 공납[疊貢]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영조 37년(1761) 당시 종묘 천신월령과 휘녕전 천신에 쓰는 生兎는 兩道에서 外貢으로 봉진되는 것과 경기・호서・영남에 貢價로 책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호조판서 尹東度는 이렇듯 京外 다섯 곳에서 공헌하는 것은 심히 과하다고 지적하였고, 이 외에도 천신물인 蕨菜 역시 疊貢이 있으며, 黍稷・稻粱・大麥・小麥 등의 종류도 모두 藉田에서 봉진하고 있음에도 元貢이 더 있으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아뢰었다.[63] 영조는 대신들에게 하순한 후, 외공은 임토작공의 뜻이니 그대로 지속하되 나머지는 豫備로 두는 것으로 결론지었다.[64] 외공 형식의 천신을 존치함으로써 왕토에 대한 임토작공의 뜻을 보존하려 하였던 것이다.

임토작공의 의미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는 반면, 이를 위해 움직이는 貢人 및 백성들에 대한 염려와 이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영조는 재위 말엽으로 이행할수록 천신 진상을 독촉하기보다는 공인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65] 영조 연간에는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귤의 운송과정에서 문제가 자주

62) 『孝宗實錄』 卷10 孝宗 4年 5月 25日 庚寅.
63) 『備邊司謄錄』 140冊 英祖 37年 5月 5日.
64) 『宗廟儀軌續錄』(장K2-2203) 薦新 英宗 37年 辛巳 5月 初2日.
65) 영조는 균역법과 같은 제도정비의 취지를 밝힐 때에도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송양섭, 앞의 책, 71-76면. 이러한 경향이 의례적 측면에까지 투영되었던 것이다.

발생하였다. 10월에 천신하는 金橘, 11월의 唐柚子, 12월의 乳柑·洞庭橘은 배로 운반해오는데 도중에 바다에서 잃어버려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66] 운송 때문에 해를 넘겨서 도착하는 경우 천신을 뒤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조는 점차 운송을 담당하는 공인을 걱정하는 애민의 뜻을 드러내었다. 영조가 전교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67]

> 작년에 2차에서 7차까지는 감귤이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과일 때문이 아니라 공인이 깊이 걱정되어 곧 그때 領率하고 온 사람에게 묻고 또 본 고을에서 찾아보게 하였다. 지금은 仲春이 거의 다 가고 暮春이 가까운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 모처에서 표풍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사람만 생존하였다면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과일과 함께 고기 뱃속에 葬事를 지냈다면 어찌 내 마음만 슬퍼하고 가엾게 여기겠는가?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는 공인의 처자식을 생각하면 내가 滄海 속으로 몰아넣은 거나 매일반이다. 하교가 과하다고 말하지 말라.

영조는 감귤이 제때 도착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을 맡은 공인이 걱정되어 고을에 찾아보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인의 처자식에 대한 우려까지 내비치며 국왕인 자신의 애민의식이 두루 미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이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영조는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 영조 39년(1763) 제주에서 공과를 실은 배 3척을 보냈는데 2척은 표류되었고 1척 역시 소식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조는 천신할 계절이 지나갔지만 행방불명된 공인과 제주 백성에게 마음이 쓰인다고 전교하였다.[68]

요컨대, 종묘 천신의 陳設과 行禮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과정에는 각도의 道臣과 백성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임토작공과 효의 의미를 보존하려는 왕실의 입장과 각 도에서 천신진상을 준비해야 했던 백성들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었다. 왕실의 천신은 선대에 정한 전례임은 물론 통치 영역의 온전함을 역대로 조선을 통치해왔던 선대왕께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節

66) 『宗廟儀軌續錄』(장K2-2203) 薦新, 英宗 23年(1747) 丁卯 11月 12日; 『宗廟儀軌續錄』(장K2-2203) 薦新, 英宗 34年(1758) 戊寅 6月 25日.
67) 『備邊司謄錄』 141冊 英祖 38年 2月 27日.
68) 『備邊司謄錄』 144冊 英祖 39年 12月 7日.

損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대동법의 시행과 여러 방법적 절충을 통해 백성들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병행되면서 종묘 천신은 지속되었다.

4. 薦新 절차의 구조와 '孝'

各道와 各司에서 준비한 時物이 왕실에 도착하면 奉常寺와 宗廟署에서 이를 종묘에 모셔진 역대조의 신주 앞에 진설하여 예를 행하였다. 시물을 준비하는 절차가 임토작공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진설하여 예를 행하는 절차는 역대조에 대한 효를 상징하였다. 시물의 준비과정이 대동법으로 인해 변화를 겪었다면, 진설하는 의식에 있어서는 『국조오례의』를 따르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일부 절차적 조정이 있었다.

조선의 종묘 천신 의식이 구체적으로 상정되었던 것은 태종대였다. 태종 11년(1411) 태종은 예조에 명해 천신하는 방법에 대해 상고하도록 하였다. 본래 조선의 천신은 『문헌통고』를 바탕으로 종묘에서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朔望祭 때에 맞추어 兼行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방식에 따르면 朔祭까지 산물이 익지 못할 경우 望祭 때까지 기다렸다가 겸행해서 올려야 했다. 태종은 이것이 융통성이 없고 人情에도 부합하지 못한 방법이니 삭제와 망제시기에 구애받지 말고 익는 대로 천신하도록 하였다. 명에 따라 예조에서 전적을 상고하였고 향후로는 新物이 생산되는 대로 卽日로 천신하되, 삭일과 망일에 맞추어 준비가 되면 겸해서 행하도록[兼薦] 정리하였다.[69] 그리고 태종 15년(1415), 예조와 儀禮詳定所에서 여러 제사 의식을 정리하여 올렸는데 薦新儀도 이때 함께 상정되었다.[70]

천신 물품의 신선도를 확인하거나 운송 방법을 구체화하는 일은 세종대에 거론되었다. 세종은 종묘에 천신할 때 쓰는 과실류는 혹 벌레먹었을 수도 있으니 쪼개고 깎아서 올리는 것을 제안하며 상정소에서 옛 제도를 상고해보도

69) 『太宗實錄』 卷21 太宗 11年 5月 11日 辛未; 『宗廟儀軌』 4冊 薦新 太宗 辛卯年 5月 11日 辛未.
70) 『太宗實錄』 卷29 太宗 15年 3月 3日 辛丑.

록 하였다. 이에 우의정 孟思誠(1360-1438)과 찬성 許稠(1369-1439)는 자르거나 깎아서 온전치 못한 과실을 올리는 것은 古文에 없는 바이고, 또 褻慢에 가까우니 다시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판서 鄭招(?-1434)는 『祭祀禮科』에 '籩을 채웠으되 栗黃이 있다.'고 하였으니 밤은 속만 취하는 경우가 있는 듯하지만, 배・대추・능금과 같은 것은 예전에 쪼개고 깎아서 쓰는 내용이 없으니 온전한 실과로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은행・배・대추・밤・녹리(綠李)・능금 등은 薦進할 때에 쪼개어 살펴보되 과실의 10분의 8-9가 벌레먹지 않았으면 골라서 올리고, 만약 과실의 3-4가 벌레먹은 것이면 다시 고르지 말도록 전지하였다.[71] 과일을 몇 개만 쪼개어 상태를 확인하고 온전한 것을 올리도록 정한 것이었다.

운송에 관해서는 빨리 운송하는 방안이나 부패를 방지하는 일이 논의되었다. 세종 22년(1440) 濟州에서 진상하는 酸物(감귤류)을 各驛의 人吏들이 鋪馬가 아닌 소로 운송하다가 지체되어 맛이 변하는 일이 있으니 말로 遞送하도록 하였다.[72] 세종 27년(1445) 강원도 감사 李先齊(1390~1453)가 여름에 생어육을 진상하는 과정에서 썩지 않도록 嶺東의 江陵・高城과 嶺西의 原州・春川 등지에 얼음을 저장하였다가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정부에서는 네 곳이나 얼음을 저장하기 어려우니 강릉과 춘천에 1년간 쓸 얼음을 저장하여 쓸 것을 보고하였다.[73]

천신은 각 지역에서 진상한 물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구하거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불거졌다.[74] 세종 30년(1448)에는 물품의 품질을 사옹원에서 간색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철이 지난 뒤에 물품 등급의 높고 낮은 것을 조사하도록 따로 명하였다.[75]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신선도나 품질에 대한 문제는 지속되었다. 성종 4년(1473), 진상하는 채소는 먼 곳에서부터 운송되어서 폐단이 있을 뿐 아니라 말라서 맛을 잃게

71) 『世宗實錄』 卷52 世宗 13年 6月 8日 庚子.
72) 『世宗實錄』 卷91 世宗 22年 12月 2日 辛未.
73) 『世宗實錄』 卷110 世宗 27年 12月 10日 己酉.
74) 대표적인 사례는 『宗廟儀軌』 4冊(奎14220) 薦新에서 확인할 수 있다.
75) 『世宗實錄』 卷119 世宗 30年 2月 13日 己巳.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던 것에서도 그 단면을 짐작할 수 있다.[76] 이러한 문제는 조선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종묘 천신의 핵심은 정결하고 온전한 상태의 물품을 준비하는 데에 있었다. 각 지역에서 천신 진상물을 준비하면 봉상시정과 종묘서령이 물품을 점검하여 진설하였다. 천신의식에는 국왕이 참여하지 않았고 봉상시, 종묘서에서 담당하여 진행하였기에 의식절차 자체는 다른 의식에 비해 간소했다. 『국조오례의』에 수록되어있는 천신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표 3〉『國朝五禮儀』 宗廟 薦新 절차[77]

	절차
陳設	■ 천신하기 1일 전에 봉상시에서 新物을 齋廚에 진설한다. ■ 봉상시정과 종묘서령은 재주로 가서 함께 점검한다. ■ 행례 당일 籩豆를 每室 戶外에 진설하고 신물을 담는다. (물품에 따라 각각 籩・豆・爵에 담아서 준비한다. 천신하는 饌物은 종묘서령이 주방으로 나아가 가마솥을 살펴보고 소속인원을 거느리고 가서 장만한다.) ■ 봉상시정의 위차를 阼階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盥洗位를 조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되, 罍는 세위의 동쪽에 두어 勺을 얹어두고 篚는 세위의 서쪽에 세로로 두어 수건을 담아둔다.
行禮	■ 천신하는 날, 종묘서령은 소속인원을 거느리고 室門을 열어 소제하고 신물을 차린다. ■ 마치면 봉상시정은 常服으로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가 서향하고 서서 四拜한다. ■ 관세위로 나아가 북향하여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 마치면 조계로 올라가서 제1실의 문 밖으로 나아가 북향하고 선다. ■ 집사자가 신물을 봉상시정에게 준다. ■ 봉상시정은 신물을 받아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앉아 올리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 그 戶를 나와 다음 신실로 가서 받들어 올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 마치면 내려가 자리로 돌아가서 사배를 하고 물러난다.

종묘천신은 크게 행례 하루 전에 봉상시정과 종묘서령이 동석하여 진설하는 절차와 종묘 각 신실에 이것을 바치는 행례 절차로 구분되어 있다.[78] 獻爵을 하는 의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묘의례처럼 獻官이 지정되지 않았고,

76) 『成宗實錄』 卷28 成宗 4年 3月 14日 甲辰.
77) 『國朝五禮儀』 卷1 吉禮 宗廟薦新儀.
78) 『世宗實錄』 五禮 역시 절차적 구조는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奉常寺正이 참여하되 혹 봉상시정에게 연고가 있으면 僉正 이상의 관원이 대신 맡도록 했으며, 宗廟署令 역시 연고가 있으면 次官이 대신 맡도록 하였다. 이는 천신진상이 준비되는 시기에 따라 종묘 朔望祭나 攝事로 시행되는 五享大祭에 천신이 兼行되기도 하였다.

천신 하루 전날 진설할 시물의 특징에 따라 각각 籩・豆・爵에 담았고, 찬으로 올릴 것은 종묘서령이 부엌에서 가마솥을 살피고 난 후 소속을 거느리고 만들었다. 천신하는 날에 종묘서령은 소속인원을 거느리고 실문을 열어 준비하며, 봉상시정이 常服차림으로 들어가 서향으로 서서 네 번 절하였다. 이어 관세위로 나아가 북향하고 손을 씻고 조계로 올라가 1실의 문 밖에 북향으로 서서 집사자가 준비된 물품을 봉상시정에게 주면 이를 받아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앉아 올리고 부복하고 일어났다. 모든 신실에 대해 이렇게 시행하고 마치면 네 번 절하고 예를 마무리 지었다.[79]

천신은 임진왜란으로 종묘 신주를 모시고 파천 중인 시기에도 시행하려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파천중인 상황에서도 물품의 정결여부를 따졌던 것은 물론이고 절차적으로도 『국조오례의』에 합당하게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파천 중인 선조가 평양에 머무르는 동안 종묘 신주는 영숭전에 임시로 봉안하였다.[80] 이때 사옹원에서는 개성부에서 진상받은 햇오이를 천신하려했지만 평상시에 천신을 담당했던 봉상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관원이 奉進해야 할지 처분을 청하였다.[81] 선조가 永柔로 옮겨갔을 때에도[82] 濟州牧使가 봉진한 金橘 등을 천신하기 위해 승정원에 방도를 물었지만 봉상시와 종묘서의 일이었기에 감히 품하지 못하였다.[83]

경성을 수복한 이후에 비로소 『국조오례의』의 薦新宗廟儀를 바탕으로 변례를 마련하였다. 본래 奉常寺正과 宗廟署令이 모여서 진설한 뒤에 봉상시가 奠

79) 조선후기에 이르러 월령 천신물은 변경되었지만 의식구조는 『국조오례의』에 정비된 방식이 그대로 이어졌다. 정조대에 구성된 『오례통편』에서도 천신물종에 대해서만 변동된 내용을 부기하였다. 『國朝五禮通編(五)』(고181.214 이896) 卷1 吉禮 宗廟薦新儀, 이화여대 소장.
80) 『宣祖實錄』 卷26 宣祖 25年 5月 10日 己巳.
81) 『宣祖實錄』 卷26 宣祖 25年 5月 12日 辛未.
82) 『宣祖實錄』 卷36 宣祖 26年 3月 11日 丙寅.
83) 『宣祖實錄』 卷36 宣祖 26年 3月 14日 己巳.

禮를 행하는 것이 규례이지만 당시 행재소에는 봉상시 관원이 한 사람도 없었다. 결국 예조와 종묘의 관원을 임시 종묘인 假廟로 보내 代行하는 방안으로 변통하여 시행하였다.[84] 임진왜란 직후에는 재정이 궁핍하여서 국가와 왕실의 모든 제사를 복구할 수 없었기에 중요한 제향과 의식을 선별하여 복구하였는데,[85] 천신은 당시에 우선적으로 복구된 종묘 의례 중 하나였다.

전란 이후 천신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시물의 품질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지적되었다.[86] 물품의 준비과정 뿐만 아니라 의식 시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천신과 소비의 선후관계가 바뀌는 것이나 천신을 담당하는 관원들이 의식을 대충 시행하는 것이 그러한 예였다.

기본적으로 조상께 제철의 산물을 바쳐 천신한 후 諸殿에 봉진하는 것이 효를 다하는 도리였지만 이러한 순서를 어겨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 효종 4년(1653) 3월, 종묘에 薦魚를 바치는 천신이 시행되기 전에 사옹원에서 諸殿에 封進한 일이 있었다. 산물을 먹기 전에 조상에게 먼저 바치는 것은 효를 표현하는 것인데,[87] 이를 어긴 것은 불효였다. 효종은 이는 무척 미안한 일이니 앞으로는 천신이 있은 후에 봉진할 것을 하교하였다.[88] 그리고 천신을 먼저 하고 난 후 각전에 봉진하는 것[先薦而後進]을 분명한 법식으로 삼게 하였다.[89]

물품을 맡은 봉진관과 의식을 관장하는 봉상시와 종묘서에서 천신을 무책임하게 시행하는 폐단도 있었다. 숙종 33년(1707) 숙종은 천신으로 올린 銀口魚가 작고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黃石魚같다고 비판하며 이를 준비하여 올린 강원감사 任舜元(1653-1723)과 예조당상 낭청을 파직하고 해당 봉진관을 치죄하였다.[90] 숙종 40년(1714)에 종묘에 大麥米와 菰子를 천신하였는데, 두 그릇 가운데 大麥米 그릇을 빈 그릇만 올렸다. 이에 해당 관원을 파

84) 『宣祖實錄』 卷40 宣祖 26年 7月 27日 己卯.
85) 신진혜, 앞의 글, 392-395면.
86) 『光海君日記』(중초본) 卷129 光海 10年 6月 13日 庚午.
87) 『禮記正義』 卷19 曾子問 第7. "曾子問曰: '宗子爲士, 庶子爲大夫, 其祭也如之何?' 孔子曰: '以上牲祭於宗子之家. 貴祿重宗也.' 上牲, 大夫少牢. 祝曰: '孝子某, 爲介子某薦其常事.'"
88) 『孝宗實錄』 卷10 孝宗 4年 3月 28日 甲午.
89) 『孝宗實錄』 卷10 孝宗 4年 5月 25日 庚寅.
90) 『宗廟儀軌續錄』(장K2-2202) 薦新 肅宗 33年 丁亥 6月 初2日.

직하고 수복은 유사로 하여금 치죄토록 비망기를 내렸다.[91] 이러한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었지만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종묘 천신의식에 대한 교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영조대였다. 영조는 종묘에서 시행되는 여러 제향과 의식에 대해 관심이 지대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천신을 담당하는 봉상시 관원의 복장 교정이 이루어졌다.[92] 영조 21년(1745) 金在魯(1682-1759)는 『국조오례의』의 '종묘에 천신할 때 천신관은 常服 차림으로 각 殿에 奠을 받든다.'는 조문에서 '常服'을 홍포로 알고 천신관이 紅團領을 입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經國大典』의 儀章 규정에 堂下 3품 이하에는 원래 紅袍가 없고 靑綠袍만 있으니, 천신관의 상복은 黑團領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조는 김재로의 지적대로 천신을 담당하는 봉상시 관원의 복장을 흑단령으로 고치는 것에 동의하였다.[93]

영조는 종묘 제향을 親行할 당시 천신을 직접 시행하기도 하였다. 영조 26년 하향대제 친향 시기에 慶尙道에서 올린 竹筍이 당도하였기에 겸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묘 삭망제나 대신들이 攝行하는 오향대제가 시행될 때 천신물이 당도하면 천신을 兼行했다. 하지만 국왕이 친향할 때에 천신을 겸해서 시행하는 규례는 없었기에 예조판서 申晩이 방도를 여쭈었다. 영조는 천신을 지체하는 것은 마음이 편지 못하니 친향때 겸행할 것을 분부하였다.[94] 영조가 천신을 겸행하게된 것은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였다. 국왕이 직접 종묘에 제향하는 것은 역대조에 대한 현 국왕의 정통성을 과시하는 의미를 담았다. 여기에 임토작공과 효의 의미를 보여주는 천신 의례까지 겸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천신에 진설되는 물품의 점검과 행례 절차를 철저하게 규정하는 일도 영조대에 이루어졌다. 영조는 천신에 쓰일 물품이 도착했을 때 봉진하는 절차에 대해 세밀하게 전교하였다. 천신물품은 各道 道臣→봉상시→예조당상→봉상시의 순서를 거쳐 간품이 된 후 천신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영조 47년

91) 『宗廟儀軌續錄』(장K2-2202) 薦新 肅宗 40年 甲午 5月 初5日.
92) 『宗廟儀軌續錄』(장K2-2203) 薦新 英祖 21年 乙丑 6月 初10日.
93) 『英祖實錄』 卷61 英祖 21年 6月 10日 辛亥.
94) 『承政院日記』 1055冊 英祖 26年 4月 9日 辛巳.

(1771) 12월, 천신물품을 관찰사가 직접 封해서 보내고 그것이 봉상시에 도착하여 예조당상이 받들게 되었을 때 비로소 開封하는 일을 정식으로 삼도록 하였다. 물품을 확보하고 운송이 시작되는 과정에 대해 관찰사가 감독하는 규칙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貢果를 봉입할 때 茅一閣에서 기다리며 천신물품 가운데 만약 상한 것이 있으면 廚院에 말하여 代封한 후 봉입하는 일을 봉상시 주원에 분부하였다. 魚物과 貢果를 막론하고 비록 깊은 밤이라 해도 봉상시에 도착했으면 예조당상이 곧장 가서 간품하고, 비록 다음날 새벽에 천신하더라도 봉상시 관원은 바로 太室에 배진하고 유숙해서 거행하는 일을 분부하였다. 또한 이후 제반 도착하는 것들은 바로 該曹에 보내고 만약 邸人이 지체한다면 해조에서 草記하도록 전교하였다.[95]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하나의 규례로 정리되어갔다.[96]

요컨대, 종묘 천신은 각 도에서 임토작공의 뜻을 담아 시물을 받들어올리면 그것을 왕실조정에서 역대조가 모셔진 종묘에 진설하고 행례함으로써 비로소 효의 모습을 구현하였다. 전란의 상황에서도 시행되었고 국가의 제도가 복구되는 과정에서도 상황에 맞추어 지속되었다. 조선 초기에 정비된 제도를 따르면서도 잘못 전승되거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였고,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국왕의 종묘 친향에 겸행되기도 하였다. 天命을 받들어 조선을 건국하고 이어왔던 선대왕들에 대해 국가가 온전히 통치되고 있음을 임토작공과 효의 상징을 담은 천신을 통해 드러냈던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천신진상으로 물품을 준비하고 이를 조상께 바치는 이중적 구조를 띠었던 종묘 천신의 함의에 대해 정리하였다. 조상을 모신 祠堂에서 시행되었던 천신은 '새로운 물품을 조상께 먼저 바친다'는 상징적 행위를 통

95) 『宗廟儀軌續錄』(장K2-2203) 薦新 英宗 47年 辛卯 12月 20日.
96) 『宗廟儀軌續錄』(장K2-2203) 薦新 英宗 51年 乙未 11月 初5日.

해 '孝'를 보여주는 의례였다. 일반 사대부가에서는 천신으로 '효'를 가시화했다면, 왕실에서는 '任土作貢'과 '효'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였다. '임토작공'의 뜻을 바탕으로 각 관서와 각 지역의 백성들이 계절 생산물을 공물과 진상으로 바치면, '효'의 뜻을 담아 왕실조정에서 종묘에 모셔진 역대조께 의례적 절차에 맞추어 이것을 바쳤다. 즉, 백성들이 생산의 영역을 담당했고 조정과 왕실에서 의례적 영역을 담당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종묘 천신제도는 태종대부터 정비되어 성종대『國朝五禮儀』에 수록되었다. 하지만 전례서에 지정된 종묘천신 외에도 文昭殿에 대한 천신이 별도로 존재하였고,『국조오례의』에 지정되지 않은 물품이 別進上으로 천신되는 경우도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문소전이 소실된 후 그 천신물종이 종묘로 통합되고, 천신물품의 생산시기에 맞추어 봉진 시기를 재조정하면서 전체적인 천신월령이 재정리되었다.

천신 진상은 국왕이 통치하는 각 도에서 산물을 바치는 만큼 물종이 다양했다. 天鵝와 같이 희귀하여 구하기 어렵거나, 제주도의 각종 귤처럼 운송이 까다로운 물목도 있었다. 구하기 어려운 계절산물을 바치거나 운송해야 하는 백성들의 입장은 조정에서 자주 거론되었지만, 역대 국왕께 바치는 물품을 줄이거나 없애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마찰을 조정하는 일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조선후기에 이르러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천신 외공과 진상에 대해서도 대동법을 적용하여 일부는 현물봉진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貿納과 代捧, 退捧을 할 수 있도록 정식화하였다.

천신 의식의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수정이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의식 구조는『국조오례의』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시행했으나, 일부 잘못 전승되거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였다. 특히 영조는 천신에 진설되는 물품의 점검과 행례 절차를 철저하게 규정하였다. 누대로 진상된 물품의 신선도나 상태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영조는 천신물품을 담당하는 관찰사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여 봉인하고 이것을 예조당상이 받아서 개봉하는 등의 검증과정을 철저하게 하도록 정식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천신은 종묘의 朔望祭나 攝祀로 진행되는 오향대제에 겸행하여 시행되었는데,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국왕의 종묘 친향에 겸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월별로 지정되어 있는 천신시물은 매달 종묘에서 시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가의 각 지역에서 공상되는 물품이 역대 국왕 앞에 선보여졌다. 조선 왕실의 정통을 이어왔던 선대왕들에 대해 임토작공과 효의 상징을 담은 천신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온전함을 보였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조대까지의 변화상만을 거시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이후 시기의 변화과정과 종묘 이외에 천신이 이루어졌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추후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고석규,「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한국사론』제12호, 서울대 국사학과, 1985, 173-230면.
김상보・한형주 외,『종묘, 조선의 정신을 담다』, 국립고궁박물관, 2014.
德成外志子,「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中人層貢人」,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渡邊信一郎, 문정희 옮김,『천공의 옥좌—중국 고대제국의 조정과 의례—』, 신서원, 2002.
송양섭,『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 태학사, 2015.
신명호,「융희연간 享祀釐正과 薦新進上廢止」,『동북아문화연구』제2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151-167면.
신진혜,「임진전쟁기 종묘의 소실과 재건 과정 연구」,『역사학보』제240집, 역사학회, 2018, 377-416면.
유영옥,「조선시대『尙書』禹貢 이해의 정치경제적 시각」,『東洋漢文學硏究』제37집, 東洋漢文學會, 2013, 119-149면.
이정철,『대동법—조선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0.
최주희,「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 :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4.
한복진,「조선시대 궁중의 천신(薦新) 식품에 대한 고찰」,『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제12권 6호,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02a, 489-501면.
_____,「조선시대 궁중의 천신(薦新) 의례에 관한 고찰」,『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제12권 6호,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02b, 477-488면.
한영국,「호서에 실시된 대동법(下)」,『역사학보』제14집, 역사학회, 1960, 77-132면.
한정수,「高麗時代『禮記』月令思想의 도입」,『사학연구』제66호, 한국사학회, 2002, 49-77면.

德成外志子,「朝鮮王朝後期の國家財政と貢物・進上」,『朝鮮學報』第173輯, 京城: 朝鮮學報社, 1999, 49-85面.
田川孝三,『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Abstract】

The Chunsin Ceremony (薦新) of Joseon Dynasty
—Meaning of Tribute and Filial piety—

Shin, Jean-Hae*

The Chunsin ceremony (薦新) which practiced by royal families and aristocrats was showed filial piety in Joseon dynasty. In this research, the people of Joseon prepared tribute, regional specialties especially foods, and the government and Royal families dedicated them to their ancestors in Royal Ancestral Shrine (宗廟). With the Chunsin ceremony, the aristocrat families expressed filial piety. However, in case of Royal families, not only expressed filial piety but also symbolized region of the country based on tribute.

The Royal families' Chunsin ceremony was prepared as tributes by the people and there was a lot of trouble with it. Some of Chunsin tributes, wild animals like swan (天鵝), were hard to prepare because it was rare to obtain in Joseon. In order to improve these kind of problems, the Deadong regulation (大同法) was implemented and government tried to resolve the grievances of the people. In principle, the Chunsin tributes (薦新進上) have to be offer as real items. But the Deadong regulation regulated the Chunsin tributes could be offer by items that bought (貿納), similar items (代捧), and postponed the tribute period (退捧). It was the government's consideration for the people.

Keywords: Chunsin (薦新), Chunsin Calendar (薦新月令), Royal Ancestral Shrine (宗廟), Munsojeon (文昭殿), Tribute (進上・貢納), Deadong regulation (大同法), Tribute based on region (任土作貢), Filial piety (孝).

접수일: 2019.12.31. ‖ 심사일: 2020.01.13. ‖ 게재확정일: 2020.02.07.

* Lecturer, Institue for General Education, Korea Univ.